

철강재 수입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2016. 11

최민수·전영준·박용석

- 논의 배경 4
- 건설용 철강재 시장 동향 및 수입 실태 6
-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의 문제점 13
-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 규제시 파급 효과 22
- 정책 대안 30

- 최근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표지판 등에 주요 건설 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원산지 표기는 위생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하며, 건설현장의 표지판이나 준공석 등에 건설자재 등의 원산지 표시를 강제하는 사례가 없음.
 - 다만,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자재의 납품서 등에 자재 원산지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
 - 우리나라의 경우, 철근 제품 표면에 원산지를 표기하고, H형강에는 제조회사의 롤링마크를 표기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인지 혹은 수입 제품인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음.
- 건설현장 내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 규제는 ‘수입산’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에 편승하여 건설자재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으나, 원산지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KS 등 소요 품질에 적합한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재시공 요구 등 소모적인 분쟁이 우려됨.
- 국내 철강재 시장은 공급자 위주의 과점(寡占) 시장으로서, 만약 철강재의 수입이 없을 경우, 심각한 수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이 우려되며, 이는 건설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나 일반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국내에서 형강 생산업체는 2개사에 불과하며, 철근 생산업체는 10개사로서 상위 4개사가 7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철강재는 시공 원가의 7~1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만약 철강재 가격이 50% 상승할 경우 건축공종의 직접공사비는 평균 3.7%, 총공사비는 1.9%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 건설투자액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최대 3조 9,8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건설현장 내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 제도는 중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WTO협정 중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에도 저촉될 우려가 높음. 또한, 피규제 상대국에서 비관세 장벽 등을 활용한 무역 보복 조치도 우려됨.
- 철근이나 형강 등 건설용 철강재의 경우,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총수요의 10~20% 수준을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입선과 유통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만약, 덤핑(dumping)에 의한 과도한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로써 충분히 해결하는 것이 가능함.
- 수입 철강재의 품질을 확보하려면, 수입 통관 후 보세창고에서 시험·검사 후 출하하거나 혹은 수입선(輸入先)을 대형 철강업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I 논의 배경

- 최근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 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¹⁾를 보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사 등을 적은 표지 및 표지판을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에 게시 및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시공 중인 건설현장 및 완공 시설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공사 관련 현황 정보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에 따른 주요 건설 자재·부재의 원산지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임.
 - 현재 규정을 보면, 시공 중인 건설현장 및 완공된 시설물에 공사명, 공사 내용,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공사 금액, 공사 기간 등의 공사 관련 현황 정보를 게시해야 함.

〈표 1〉 주요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안)

현 행	개 정 안
시공 중인 건설현장 및 완공된 시설물에 공사 관련 현황 정보 게시 - 공사명, 공사 내용,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공사 금액, 공사 기간 등	시공 중인 건설현장 및 완공된 시설물에 공사 관련 현황 정보 게시 대상 추가 - 공사명, 공사 내용,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공사 금액, 공사 기간, 주요 건설 자재·부재*의 원산지 표시 (대상 자재 : 레미콘, 아스콘, 바닷모래, 철강재, 부순골재, 순환골재)

- 그런데 건설현장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원산지 정보 공개를 통하여 소비자 정보 주권을 확대하고, 국산 건설 자재나 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수입산 자재의 활용이 규제되면서 공사 원가 상승이나 무역 마찰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음.

1)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사,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동 법안은 현재 철근 및 형강 등 수입 제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의 주장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철강업계의 입장을 보면, 건설공사시 저품질의 수입 건설자재 또는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자재가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 철강업계에 따르면 최근 저가의 수입산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²⁾ 또한, 수입 철강재의 경우 허위 품질 성적서를 제출하거나 중량 미달 제품을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고 있으며³⁾, 그에 따라 KS인증도 취소되는 사례⁴⁾가 발생하는 등 건설 자재부재의 품질 저하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 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행정형벌로 상향하여 품질이 검증된 국내산 건설 자재·부재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 반면, 건설업계의 입장을 보면, 건설자재는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산 자재일지라도 품질시험 등을 거쳐 KS규격 이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현재도 「대외무역법」에 따라 철강 제품 자체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제를 신설할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표지판에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시를 강제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미흡 등에 기인하여 수입산 철강재가 KS에 적합한 우수한 품질을 갖추었다더라도 불합리하게 사용이 기피되고, 상대적으로 고가(高價)의 국산 철강재 사용이 강제될 수 있다는 것임. 그리고 이는 결국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입장임.

❖ 본고에서는 중국산 철강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 관련 법안의 문제점 및 시장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예를 들어 최근 저가의 수입산 철강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철강재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한 결과 2013년 272억원, 2014년 1,886억원, 2015년 1,356억원 규모가 적발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음.

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에 따른 주요 건설 자재·부재 중 수입산이 존재하는 것은 철강재로서, 최근 중국 등으로부터의 철강재 수입 급증 과정에서 일부 수입산 철강재의 원산지 표시 위반, 중량 미달 및 품질 기준 미준수 등의 위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4) 중국산 불량 철근 태강강철 'KS인증' 첫 취소(한국경제, 2015. 10. 27) ; 한국표준협회, 중국 진시강철 철근 KS인증 전격 취소(글로벌 이코노미, 2016. 10. 27) 참조.

Ⅱ 건설용 철강재 시장 동향 및 수입 실태

1. 세계 및 중국의 철강재 시장 동향

-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에 따르면 2015년 세계 조강 생산량은 2014년과 비교하여 2.8% 감소한 16억 2,280만톤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약 50%를 점유하는 중국에서 34년 만에 철강 수요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음.
 -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도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세계 철강 설비능력은 7억톤 정도 과잉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설비능력이 약 11억톤에 달하나, 생산은 약 8억톤, 수요는 약 7억톤 규모로서, 중국 정부에서는 향후 생산능력을 1억 5,000만톤 가량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⁵⁾

- 중국의 2015년 조강(粗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8억 383만톤을 기록했는데, 중국의 조강 생산은 2010년 이전에는 연평균 10% 이상 증가했으나, 2010년 이후로는 7% 내외로 증가율이 축소
 - 2015년의 강재 가격은 품목별로 27~42% 하락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7~28%)보다 더 큰 하락 폭임.

- 중국 철근업체들은 자국 건설경기 침체로 철근 수요가 둔화되면서 한국, 싱가포르, 미얀마 등 건설경기가 양호한 주변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2015년 중국 강재 수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억 1,151만톤을 기록함.⁶⁾

2.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 실태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철강 수입은 총 2,206만톤이며, 그 가운데 62.2%에 해당하는 1,373만톤이 중국산임.
 - 중국산 철강의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5%에서 2015년에는 62%로 급등함. 이에 비해 일본산 수입 비중은 2010년 44%에서 2015년 30%로 하락함.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철강 수입의 92%를 중국(62%)과 일본(30%)산 제품이 점유하고 있음.⁷⁾

5) 日本經濟新聞(2016. 6. 7) 참조.

6) 중국은 2006년부터 강재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었으며, 2009~2015년 기간 중국의 수출량은 연평균 29.2% 증가.

❖ 하지만 수입 비중이 높은 철강은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주로 활용되는 열연강판, 선재 등이며 건설용 철강재인 철근 및 형강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음.

- 대표적 건설용 자재인 철근의 경우 2016년 8월까지 수입은 94만톤으로 전년 수입실적 112만톤의 84%를 조기 달성하였으며, 상반기 수입량이 60만톤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8년(95만톤) 이후 8년 만이나, 이는 주택경기 호황에 따른 공급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수입 점유율은 예년 대비 유사함.
- H형강 또한 지난 2015년 7월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조치 시행 이후 40%를 넘어서기도 했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축소되어 올해 3월 이후에는 20%를 밑도는 점유율로 축소됨.⁸⁾

〈표 2〉 철강 7대 주요 품목의 국내 시장 점유율

(단위 : 만톤, %)

구분	2016년 1~8월			2015년		
	국산	수입	총수요	국산	수입	총수요
열연강판	602 (56.8)	457 (43.2)	1,060 (100.0)	883 (72.8)	329 (27.2)	1,213 (100.0)
봉강	172 (60.1)	114 (39.9)	286 (100.0)	266 (62.9)	157 (37.1)	423 (100.0)
선재	157 (61.3)	99 (38.7)	256 (100.0)	232 (62.4)	140 (37.6)	372 (100.0)
형강	208 (66.2)	106 (33.8)	314 (100.0)	312 (66.2)	159 (33.8)	471 (100.0)
중후판	493 (73.6)	177 (26.4)	670 (100.0)	746 (72.9)	277 (27.1)	1,024 (100.0)
강관	228 (83.5)	44 (16.5)	272 (100.0)	319 (82.0)	70 (18.0)	389 (100.0)
철근	685 (88.0)	94 (12.0)	778 (100.0)	980 (89.7)	112 (10.3)	1,093 (100.0)

자료 : 한국철강협회/글로벌 이코노믹 2016.10.24일 보도 내용을 재구성함.

❖ 일부에서 주장⁹⁾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수입국(2014년 기준 수입 침투율 41%)은 과도한 경향이 있으며, 이는 반덤핑 등 국가별 무역 규제 조치에 따라 시장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임.

- 수출 또한 급격히 증가(2000년 1,377만톤 → 2015년 3,155만톤)했음을 고려시 수입(2000년

7) 김지선, 유승록, 2016년 전 세계 철강산업 화두는 '통상마찰', POSRI 보고서, 포스코경영연구원, 2016.2.25., p.3.

8) 스틸데일리, 중국산 H형강 시장 점유율 '반덤핑 後 최저', 2016.6.23일 기사.

9) 이윤희, 최근 글로벌 철강통상규제 동향과 국내 수입재 대응방안, 국회 세미나(박명재·이기구 의원실) 발제자료, 2016.9.7.

1,147만톤 → 2015년 2,206만톤)은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

- 철강재가 대표적인 무역 규제 품목임을 고려시 수출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는 일정 수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수입 장벽이 높은 타 국가들의 경우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수입 침투율은 적절한 수준임.

- 2014년 기준 국가별 철강 수입 침투율 : 미국(39%), 일본(10%), 대만(45%), 태국(87%)

3. 국내 건설용 철강재 시장 및 수입 현황

- 국내 6개 철근 공급업체의 연간 철근 생산능력은 1,078만톤으로 2015년 국내 철근 총 수요량인 1,093만톤에 육박하고 있음.

- 전기로를 기반으로 한 철근, H형강 등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을 비롯해 대한제강, 한국철강 등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¹⁰⁾

〈표 3〉 국내 철강 6개 업체의 연간 철근 생산능력(2015년 기준)

(단위 : 만톤, %)

업체명	계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
연간 철근 생산능력	1,078	340	275	155	120	113	75

자료 : 철강협회 / Hanwha Daily, 한화투자증권, 2015.9.10.

- 2015년 기준으로 건설용 철강재의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철근이 10.3%, 형강 33.8%, 중후판이 27.1%를 점유하고 있음.

-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16년도 중국산 철강 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중후판 21.0%, H형강 20.1%으로 조사되었음.¹¹⁾

10) 포스코(POSCO)는 그동안 포항과 광양의 고로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철강재 생산에 집중하면서 철근을 생산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베트남 봉형강 공장인 포스코 SS VINA를 통해 철근과 형강을 생산하고 있음.

11) <http://blog.naver.com/koreakca7/220806640901>.

〈표 4〉 주요 건설용 철강재 품목별 생산, 출하, 수입 현황

(단위 :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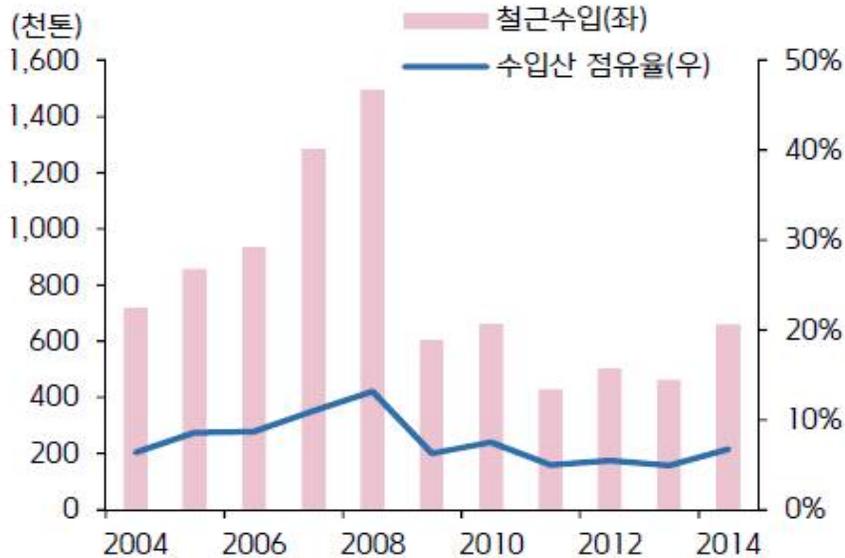
구 분		2013	2014	2015(e)	
철근	국내 생산	9,151	9,367	9,744	
	출하	내수 (a)	8,912 (95.0)	9,065 (93.2)	9,839 (89.7)
		수출	324	191	94
	수입 (b)	468 (5.0)	660 (6.8)	1,136 (10.3)	
	국내 소비 (a + b)	9,380 (100.0)	9,725 (100.0)	10,975 (100.0)	
중후판	국내 생산	8,939	10,122	9,900	
	출하	내수 (a)	6,247 (68.8)	7,589 (67.8)	7,378 (72.8)
		수출	2,665	2,408	2,342
	수입 (b)	2,839 (31.2)	3,599 (32.2)	2,754 (27.2)	
	국내 소비 (a + b)	9,086 (100.0)	11,188 (100.0)	10,132 (100.0)	
형광	국내 생산	4,700	4,694	4,494	
	출하	내수 (a)	3,211 (67.2)	3,153 (64.7)	3,180 (66.5)
		수출	1,496	1,513	1,355
	수입 (b)	1,567 (32.8)	1,720 (35.3)	1,600 (33.5)	
	국내 소비 (a + b)	4,778 (100.0)	4,873 (100.0)	4,780 (100.0)	

자료 : Steel Data, 한국철강협회/홍석범(2015.12), p.6의 표를 참조하여 작성.

❑ 철근은 전형적인 내수 위주의 제품으로서, 가격 이외에는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 간 철근 수입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1%, 2008년 13%를 제외하고는 대개 10% 미만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2015년 아파트 분양 증가 등 국내 건설경기의 호조로 철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산 철근의 수입이 늘어났는데, 한국철강협회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의 철근 수입량은 112만톤으로 2014년 대비 70.7% 증가하였음.
- 이 가운데 중국산 철근 수입량은 2015년 99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에 64만톤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림 1〉 철근 수입량 및 수입산 점유율



자료 : 한국철강협회, 키움증권(2015.11).

■ 중국산 철근이 증가되는 배경은 국내산 철근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강점인데, 2015년 기준으로 철근의 수입 가격은 톤당 43만원인 데 비하여 국내 제품은 57.7만원으로 수입 제품 가격이 국내 제품의 75% 수준으로 저렴한 편임. 또한, H형강은 수입 제품이 국내산 가격의 81% 수준임.¹²⁾

■ 건설용 철강재 또한 타 철강 품목과 같이 최근 수입용 철강재 활용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유사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최근 10년 동안 국내산 유통가 대비 수입 유통가가 철근의 경우 평균 9.3%, 형강은 15.5%가 저렴하였음. 최근 5년간으로 보면 그 격차가 더욱 커져 철근의 경우 수입 유통가가 평균 14.3%, 형강은 22.2%가 저렴함.
- 이에 따라 수입산 철강재 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았던 2002년의 경우 철근 기준 내수(97.5%)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수입산 철강재 가격이 싼 2015년에는 내수 비율(89.7%)이 소폭 감소함.
-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가 2015년 11월부터 베트남 공장(POSCO SS-VINA)에서 생산된 철근과 H형강을 국내에 반입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입 철강재의 통계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 제품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¹³⁾

12) 홍석범, 2016년 금속산업 전망 : 철강업종, 2015-12 이슈페이퍼, 금속노조노동연구원, 2015.12, p.4.

13) 포스코 베트남 공장의 한국행 수출은 철근이 연간 10만톤, H빔은 연간 5만톤 수준으로 추정(경북매일, 포스코 베트남 공장 철강재 수입 본격화, 2015.11.25일 기사).

〈그림 2〉 국내산 및 수입산 철근 유통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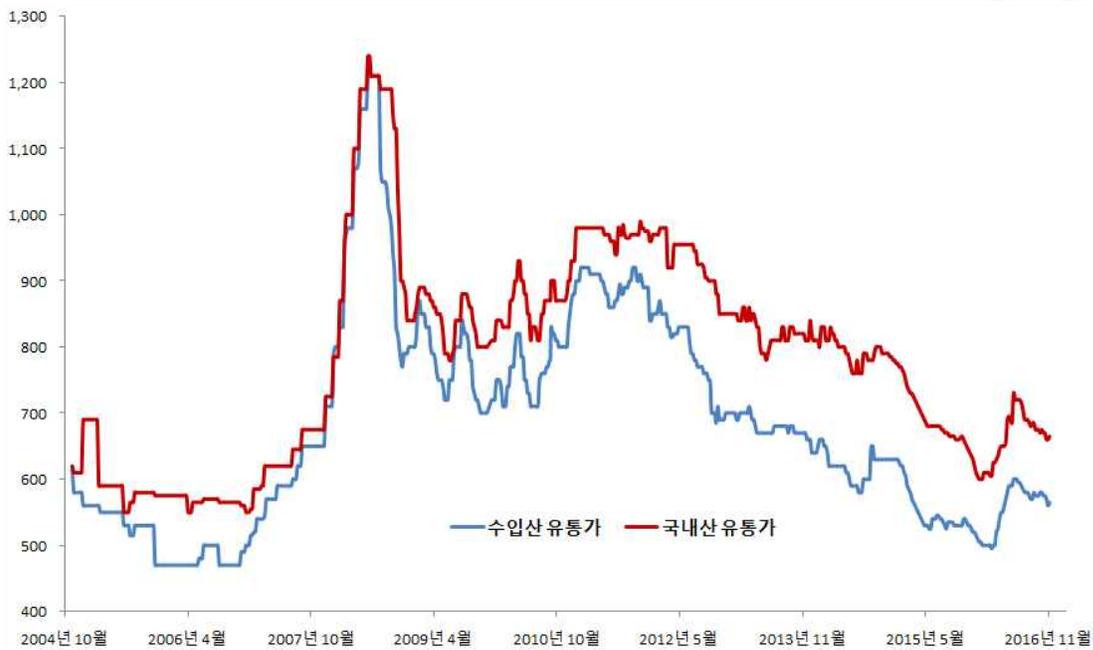
(단위 : 원/kg)



주 : 수도권 1차 유통 현금 판매가, SD 400(10mm), 국내산 유통가(7대 제강사)·수입 유통(중국산) 기준.
 자료 : 스틸데일리.

〈그림 3〉 국내산 및 수입산 형강 유통가격 추이

(단위 : 원/kg)



주 : 수도권 1차 유통, SS400(두께 소형), 국내산 유통가(현대제철)·수입 유통가(중국산) 기준.
 자료 : 스틸데일리.

❖ 최근 철강재 가격 하락은 중국산 제품의 과도한 수입에 기인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통계적으로 검증해보면 철강 제품의 원료인 철광석이나 철 스크랩(scrap)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세계 철 스크랩 가격은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2015년의 경우 철 스크랩 가격은 전년 대비 30~45%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이러한 철 스크랩 가격 하락의 원인은 세계 경기 침체 및 철강산업의 공급 과잉 등과 맞물려 철광석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 기인함.¹⁴⁾
- 또한, 중국의 철 스크랩(scrap) 발생량은 2020년에는 1억 2,800만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WSD 및 중국의 주요 기관들은 중국이 2018년경에 철 스크랩 자급을 이루고, 그 이후에는 순수출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는 철 스크랩 가격은 하락 내지 안정세가 전망됨.¹⁵⁾

〈그림 4〉 호주산 수입 철광석 가격 추이



〈그림 5〉 국내 및 일본 철 스크랩 가격 추이



자료 : 변종만(NH투자증권, 2015).

❖ 2010년 이후 중국 철근업체들의 KS 인증 획득이 늘어나고 있는데, SD400, SD500을 비롯한 범용 철근은 물론, 최근 들어서는 SD600 등 초고강도 철근까지 KS 인증을 받고 있음.

- 2016년 현재 KS 인증을 받은 철근회사는 중국 11개사, 한국 26개사 수준임.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철근 제품의 KS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¹⁶⁾

14) 포스코경영연구소, 철 스크랩 가격 하락 원인과 전망, 2015.8.19.

15) 포스코경영연구소, 중국 쇼크로 철강원료 低가격 시대 초장기화 가능성, 2015.7.29., p.5.

16) 철근에 포함된 불순물의 최대 허용값을 낮추고, 항복강도의 상한값 설정 등임.

Ⅲ

건설 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의 문제점 - 철강재를 중심으로 -

1.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수입 자재의 사용 배제 → 공사 원가 상승

- 중국산 건설용 철강재의 경우 국내산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선입관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품질 비교에서는 국내산과 큰 차이가 없음.
 - 철근의 경우 철강제품 중 생산 난이도가 높은 제품이 아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 수출업체들은 열연코일 등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춘 업체들로서 국내 제강사 대비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생산하고 있음.¹⁷⁾

〈표 5〉 국산 및 수입 철근의 품질 비교

시험 항목	KS 기준	시험 결과		비고
		국산	수입	
인장강도(N/mm ²)	620 이상	704	694	양호
항복점(N/mm ²)	500 이상	539	583	양호
연신율(%)	12 이상	15	19	수입품 양호
굽힘 시험	90°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양호
겉모양		"	"	양호
단위 무게(kg/m)	0.995(±6%) (0.935~1.054)	0.947	0.994	수입품 양호
화학적분 P(%), (인 함유량)	0.050 이하	0.018	0.023	양호

주 : 2015년 3~5월 동일한 건설현장 반입 자재를 대상으로 한 것임.

자료 : 한국수입봉형강품질관리협회.

- 중국의 철강 메이커는 KS나 JIS 규격을 비롯한 각국의 규격 인증을 취득하는 등 수출에 적극적인데, 그 목적은 중국 내에서의 잉여 생산분을 국외로 출하하려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품질이 우수한 중국 제품을 국외의 수요자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측면도 강하다고 함.¹⁸⁾

17) 한국수입봉형강품질관리협회 보도자료(2015.9.3).

18) 佐々木淳, 建設向け輸入鋼材の実態(-中国鋼材メーカーの現地取材を踏まえて-), 積算資料, 2012.1.

- 일본의 경우에도 수요자 측에서 수입 자재에 대하여 ‘저렴하고 조악(粗惡)하다’라는 선입견이 있었으나, 이제 그러한 인식은 들어맞지 않음. 건축 확인 신청에서도 특히 문제없이 통용되고 있으며, 실제 중국산 수입 제품의 품질은 일본의 국산 자재와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¹⁹⁾

2. KS에 적합한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재시공 요구 등 소모적 분쟁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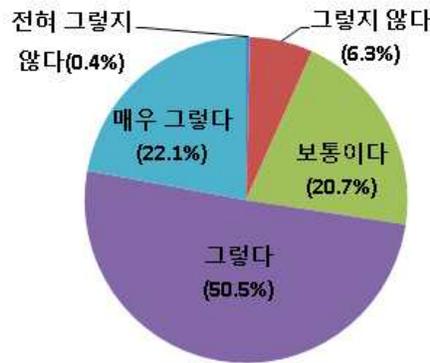
- 건설현장 및 완공된 시설물의 표지 또는 표지판에 건설 자재·부재의 원산지 표시가 시행될 경우 “동일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고 설계 기준에 맞게 사용된 건설 자재 및 부재임”에도 원산지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음.
 - 한국산업표준기준 등에 따른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고정 관념화된 국가 이미지에 따라 제품의 질을 판단하는 경향으로 인해 수입산이라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 우려됨.
 - 즉, 비효율적인 재시공 등 건축주의 부당한 요구 및 시설물에 대한 이미지 저하 등 부작용 우려
 - 이와 같이 원산지가 표지판 등에 게시될 경우 시설물의 실제 품질과는 무관한 오해로 인하여 불합리한 시장가치 하락으로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됨.
-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미리 인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제품 선택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Wall and Heslop(1986)는 자국보다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더 발전한 나라의 상품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와 같이 국가 이미지가 소비자 행동과 태도, 가치관, 선입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²⁰⁾
 - 이봉수(2009)는 국가 이미지는 상품 선택에 정(+)의 효과가 있는데, 국가 이미지가 강할수록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증대된다고 분석함.²¹⁾
 - 이제홍(2011.2)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가 이미지가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2.6%를 차지하고 있음.

19) 国内市場における輸入鉄鋼製品の現状(中国製H形鋼の実態を聞く), 積算資料, 2011.9.

20) Wall, M. and L. A. Heslop(1986), Consumer Attitudes Toward Canadian-Made Versus Imported Product,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4(2), 27-36 : 이제홍, 일본·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평가와 만족도에 관한 비교 연구, 관세학회지, 12(1), 한국관세학회, 2011.2, p.283 재인용.

21) 이봉수, 국가 이미지가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과 브랜드 개성의 조절효과, 무역학회지, 34(2) 한국무역학회, pp.73~90 : 이제홍(2011.2), p.234 재인용.

〈그림 6〉 국가 이미지가 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



자료 : 이제홍(2011.2), p.286의 표를 활용하여 그림으로 재구성함.

- ❑ 결과적으로 KS규격이나 건축공사시방서 등 관련 품질 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측에서는 단지 수입산 자재라는 것을 이유로 교체 시공을 요구할 경우, 심각한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존재

3. 외국의 유사 사례 : 건설현장 및 건축물 표지판에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사례 전혀 없어

- ❑ 건설현장 및 완공된 시설물의 표지 또는 표지판에는 일반적으로 건축주, 시공사, 현장 소장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공사 정보 이외에 건설 현장이나 완공된 건축물의 표지판에 건설 자재·부재의 원산지 표시까지 강제하는 것은 외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규제임.
- ❑ 일본의 경우, 「건축기준법」 제89조(공사현장에서의 확인 표시 등)를 보면²²⁾, 건축공사나 대규모 수선 또는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자는 해당 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양식에 의하여 현장 관련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³⁾

22) 「건축기준법」 제89조(공사 현장에서의 확인 표시 등) 제6조 제1항의 건축, 대규모 수선 또는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자는 해당 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양식에 의하여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사 및 공사 현장관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해당 공사에 관한 동항의 확인이 있었다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제6조 제1항의 건축, 대규모 수선 또는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를 해당 공사현장에 갖춰 놓지 않으면 안 된다.

23) 또한, 공사 시공자는 「건축기준법」 시행규칙 제68호 양식에 의한 확인이 있었다는 점을 해당 현장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표시하고, 설계도서를 현장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건축기준법」 제89조, 「건축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

❖ 「건축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를 보면, 공사현장의 확인 표시 양식에 게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건축주 또는 축조주 성명
- 설계자²⁴⁾
- 감리회사
- 시공회사
- 공사현장 관리자
- 공사 감리자 성명

❖ 즉, 건설현장 내에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 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어떠한 규정도 찾아보기 어려움.

〈그림 7〉 일본 공사 현장에서의 확인 표시 양식

35cm以上	
建 築 基 準 法 に よ る 確 認 済	
確 認 年 月 日 番 号	平成〇〇年〇〇月〇〇日 第〇〇〇〇〇号
確 認 済 証 交 付 者	〇〇 〇〇
建 築 主 又 は 建 築 造 主 氏 名	〇〇 〇〇
設 計 者 氏 名	一級建築士事務所 (株)〇〇設計事務所 一級建築士 〇〇 〇〇
工 事 監 理 者 氏 名	一級建築士事務所 (株)〇〇設計事務所 一級建築士 〇〇 〇〇
工 事 施 工 者 氏 名	〇〇 〇〇
工 事 現 場 管 理 者 氏 名	〇〇 〇〇
建 築 確 認 に 係 る そ の 他 の 事 項	
25cm 以上	

24) 만약,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가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속한 경우에는 설계자 성명 및 공사 감리자 성명란에 그 명칭 및 1급 건축사, 2급 건축사 또는 목조 건축사의 구별을 아울러 기재함.

4. 중복·과잉 규제 우려

(1) 수입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의무화 사항

-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건설 자재나 부재 납품시 시험성적서 교부와 더불어 납품서에 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기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
 - 또한, 철근 등 건설 자재·부재 수입품 자체에 대한 원산지 표기가 관련 법률에 의무화되어 있음.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을 보면,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철근 원산지 표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명시하고 있는데, 현품에 주조, 식각, 낙인, 박음질, 인쇄, 등사 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함(「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

〈사진 1〉 철근의 원산지 표기 예(SD500W D19 철근의 경우)



〈사진 2〉 형강의 원산지 표기 예



- ❖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에 수입되는 건설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KS(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를 적용하여 해당국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원산지 및 KS 인증을 철근 표면에 양각하여 국내에 반입하고 있음.
- ❖ 2014년부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H형강에 제조회사의 롤링마크를 표기하도록 한국 산업표준(KS)을 개정함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수입되는 H형강에 제조업체를 알 수 있는 롤링마크 표기가 적용되고 있음.

 - H형강 플랜지에 2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제조회사 약호를 표시하도록 하여, H형강을 가공하거나 절단 및 도장하는 작업 후에도 KS 제품과 식별이 용이하게 됨.
- ❖ 또한, 수입 H형강에 대한 절단·도색·천공 등의 가공 작업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5조 제8항의 단순한 가공 활동에 포함되며, 향후 이 공정을 거친 수입 H형강 제품에는 원산지 표기를 하도록 유권해석(2012년, 지식경제부)
- ❖ 이와 같이 철강재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규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따라서 소비자 측에서는 해당 제품이 국산인지 혹은 중국산 등 수입 제품인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상태임.

 - 결과적으로 이미 현행법에 의해 충분히 규율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중복적 규제 신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자재 납품서’ 등에서 원산지를 명기하는 사례

-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발주자나 시공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건설 자재나 부재 종류별로 ‘자재 납품서’ 등에 원산지 표기를 요구하는 사례 존재
- ❖ KS규격 등에서도 해당 자재의 납품서 양식에서 원자재의 원산지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사례는 존재함.

 - 예를 들어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규격에서는 납품서 양식에서 원재료인 시멘트와 골재의 원산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불확실하고 실효성이 낮은 규제

(1) 원료가 수입(중국산)인 경우, 형평성 문제 대두 가능

- ❖ 원산지 표기 규정은 완제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내산 철강 제품일 지라도 원료는 외국산 수입인 경우가 많음.
- ❖ 철강재의 원료는 크게 철광석과 철 스크랩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철광석을 해외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철 스크랩도 30%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철광석 수입량의 60% 이상을 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호주로부터 수입량은 5,000만톤 규모임.²⁵⁾
 - 철 스크랩의 경우, 2005년 이후 국내 공급 비율은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70% 미만으로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 또 다른 예로서, 포스코(POSCO)는 2015년부터 베트남 봉형강 공장인 포스코 SS VINA를 통해 철근을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포스코에서는 베트남에서 생산한 철근을 연 10만톤 가량 수입하고 있는바, 이를 수입산으로 인정하는 것도 불합리함.

(2) 대상 자재 범위의 문제

- ❖ 건설자재의 종류는 구조재, 외장재, 내장재, 설비자재, 가설재 등으로 분류되고, 수천 개의 품목이 존재하며, 중소기업청에서 발주자의 직접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설자재의 종류만하더라도 123개 품목에 달함.
 - 원산지 표시 대상 건설 자재·부재를 제한하더라도 공개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건설사와 소비자 간에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 우려

25)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6), 2010년 이후 현대제철이 일관제철소를 개소함에 따라 철광석 수입 물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음.

〈표 6〉 중소기업청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산업군	제품군
1. 가구(4)	가구, 문, 싱크대, 창
2. 금속(19)	가드레일, 가로등주, 금속울타리용철물, 난간, 돌망태, 방음판 및 방음벽, 보일러 및 구성품, 스테인레스물탱크, 쓰레기통, 외벽패널, 일반철물, 전광스크어판, 조립식구조물, 주물제품, 창, 철망, 공원체육시설, 케이블트레이, 파형관
3. 기계(36)	공기살균기,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농업용관리기계, 대형냉장고, 모터펌프, 무대장치, 밸브, 분사장비 및 약제, 상업용오븐, 소방기, 소방용방재장치, 송풍기, 수문, 승강기, 약품투입기, 여과기, 열교환장치,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응집기, 일체형청정장비, 자외선살균기, 재활용품자동선별기, 주차장치, 취사용기구, 크레인, 탈수 및 배수장치, 탈취기, 통상여과기, 팬코일유닛, 펠릿연소기기, 폐기물소각로,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향온향습기, 혼합기 및 교반기
4. 목재, 종이(4)	각재, 방부목, 판재, 합성목재
5. 섬유(1)	토목섬유
6. 인쇄, 광고물 등(3)	광고판, 실물모형, 안내(표지)판
7. 전기(20)	가로등기구, 경관조명기구, 계장(계측)제어장치, 교통신호등, 도로표지병, 도로표지판, 무정전전원장치, 발전기, 배전반, 변압기, 비닐절연전선, 수도미터, 애자, 유량계, 자동점멸기, 자동제어반, 전기용연선, 충전장치, 프로세스제어반, 실내조명기구
8. 전자정보통신(8)	구내방송장치, 다중화장치, 열차행선안내장치, 유무선원격제어장치, 전광판, 전화교환기 네트워크연결장치, 출입통제시스템,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9. 콘크리트 등(17)	레미콘, 맨홀박스, 석재, 세라믹기와, 아스팔트콘크리트, 점토벽돌,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조립식철근콘크리트자유블록, 순환골재, 천연골재, 철근콘크리트관, 철근콘크리트근가, 콘크리트배수로,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파일, 타일
10. 화학(11)	강관, 고무발포단열재, 수량계보호통, 전선관, 페인트,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에틸렌제품, 폴리에틸렌필름, 플라스틱자루, FRP제품 및 SMC포함, PVC관
10(123)	

(3) 철강재만을 위한 규제

-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는 수천 개의 품목이 있으나, 이 가운데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에 규정하고 있는 레미콘, 아스콘, 바닷모래, 부순골재, 철강재(철근, H형강, 강판), 순환골재 등 6개 자재만 원산지를 명기하라는 주장도 비합리적임.²⁶⁾

26)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품질확보 대상 건설 자재·부재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품목은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95조 제1항을 보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바닷모래, 부순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순환골재 등을 품질확보 대상 건설 자재·부재로 규정하고 있음.

❖ 더구나 6개 자재 가운데 수입산(輸入産)이 있는 품목은 철강재뿐이며, 기타 자재는 원산지 표기 의무가 사실상 불필요한 품목임.

- 레미콘 : 운반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여 대표적인 내수(內需) 품목으로서 수입이 불가능함.
- 아스팔트콘크리트 : 운반 시간의 제약 등으로 수입이 불가능함.
- 바닷모래 : 과거에 북한 등에서 일부 수입된 사례가 있으나, 현재 수입량은 전무하며, 천연자원으로서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이가 없음.
- 부순골재 : 석산에서 생산되는 골재로서, 운반 거리의 제약상 수입산을 활용하기 곤란함.
- 순환골재 : 폐콘크리트(waste concrete)를 파쇄하여 골재로 재생산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사례는 없음.
- 철강재 : 철근의 경우 국내 소비량의 10% 내외, H형강의 경우 25% 내외 수입이 이루어짐.

(4) 실효성이 낮고, 범법자만 양산 우려

❖ 건설현장의 표지판이나 준공석에 건설 자재나 부재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한 후, 실제 수입산을 활용했을 경우, 이에 대한 사후 처리가 곤란

- 특히, 철근이나 H형강 등 철강재는 골조(骨組) 자재로서 시공이 된 이후에는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이 극히 곤란함.

❖ 수입 건설자재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국산으로 둔갑하여 공급될 경우, 시공사 입장에서 원산지 확인 등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함.

❖ 결과적으로 범법자만 양산하게 되고, 건설현장에서 불필요한 행정 규제로서 작용하게 될 우려가 높음.

IV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 규제시 파급 효과

1. 국내 철강재 시장의 과점 폐해 - 수입 규제시, 수급 불안 및 가격 급등 우려

(1) 국내 철강재 시장 - 과점 경쟁(Oligopolistic Competition)에 의존

- 건자재 시장은 하나의 재화 가격이 변동하면, 그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균형 소비량이 변동하는 가격 효과(price effect)가 거의 없는 시장임.²⁷⁾

 - 그 이유는 건자재는 대체재(substitute goods)가 거의 없을 뿐더러, 건설공사가 계약 공기 내에 완수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 건자재는 적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수입도 여의치 않음.

- 결국, 특정 건자재의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건설현장에서는 이를 구매·사용할 수밖에 없음.²⁸⁾

 - 즉, 특정 건자재 시장이 독점 형태로 유지되거나, 수요가 예상 외로 급증한다면 과도한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임.

- 레미콘이나 내·외장재 등 타 건자재의 경우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설용 철강재의 경우 공급자 측에서 가격 인상을 시도할 경우,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우리나라 건설용 철강재 시장은 과점적 경쟁(Oligopolistic Competition)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 국내에서 형강을 생산하는 업체는 2개사에 불과함. 이에 따라 2014년 기준 현대제철의 봉형강 시장 점유율은 36.9%에 달하고, 동국제강의 봉강과 형강도 각각 관련 시장의 23%, 29%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2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를 상회함.²⁹⁾
 - 철근 또한 국내 철근 생산업체는 10개사³⁰⁾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국내 철근시장 점유율은 현대제

27) 최민수, 철강자재의 수급 안정화 및 정책 개선 방안, 건설산업연구원, 2004.3.31.

28) 최민수(2004), 전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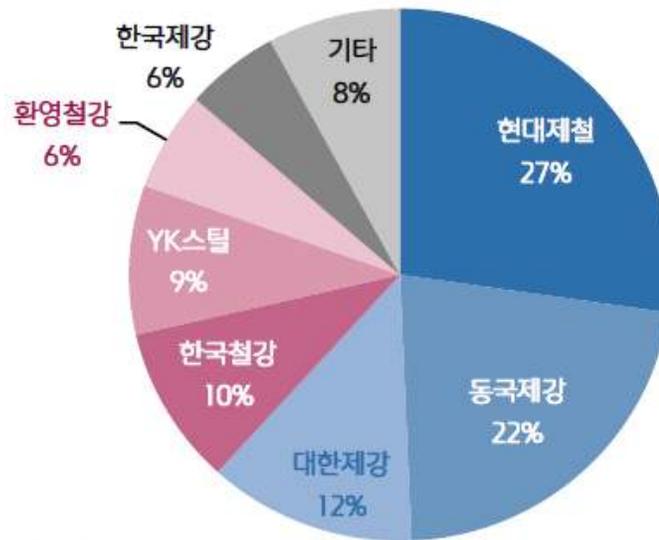
29) 각사 사업보고서 기준.

30)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 한국제강, 향진철강, 제일제강, 삼호제강, 코스틸.

철 27%, 동국제강 22%, 대한제강 12%, 한국철강 10%로 상위 4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71%를 점유하고 있음.³¹⁾

- 국내 6개 철근 공급업체의 연간 철근 생산능력은 1,078만톤으로 2015년 국내 철근 총 수요량인 1,093만톤에 육박(98.6%)하고 있음(〈그림 8〉 참조).

〈그림 8〉 국내 철강업체별 철근 생산량 점유비(2015년)



주 : 2015년 전망치 기준 ; 자료 : 한국철강협회.

❖ 우리나라 건설용 철강재 시장은 소위 공급자 우위 시장(Seller's market)으로서 항상 가격 담합 등 공동 행위의 폐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 실제로 철강업체에서는 그동안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으며, 특히 철근의 경우 가격 인상 담합과 관련하여 지난 2004년 4월 말 789억원, 동년 6월 말 6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음.
- 이 외에도 철근 제강사들은 지난 2010년 11월 건설기업과의 철근 가격 협상과 관련하여, 전 제강사가 함께 철근 출하 중단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철근 가격 분쟁은 매년 반복되고 있음.
- 급격한 가격 인상 방지를 위해 지난 2014년 이후 2년 6개월 간 운영된 건설·제강업계 간 분기 단위의 철근가격 협상 시스템 또한 최근 가격협상 실패로 해체 위기³²⁾여서 건설용 철강재 시장의 공급자 우위는 수입 철강재 시장의 확대 외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31) Hanwha Daily, 한화투자증권, 2015.9.10.

32) 건설경제, 철근가격 협상창구 '해체 위기' 맞나?, 2016.11.1일 기사.

(2) 과거의 철강재 가격 폭등 사례

■ 실제 건설용 철강재가격이 급등한 지난 2007~08년의 경우 건설업계의 재산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적자 시공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제강사의 급격한 가격 인상과 일부 유통사의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함.

- 지난 2007~2008년 초 국제 원자재(철 스크랩) 가격 상승, 유가 급등, 중국 현지 수요 증가와 중국 산 철근에 대한 수출세 인상 등의 복합 원인으로 인해 건설용 철강재 가격은 사상 최고가 경신
- 당시 1년 간 제강사의 6차례에 걸친 가격 인상과 할인 판매 전격 금지 등이 이루어졌으며, 철근값 인상으로 인한 시공 원가 상승효과는 1년 전 대비 2조 5,000억원에 달하고, H형강은 대략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³³⁾되어 원자재 값 상승에 따라 대부분의 현장이 수익률 악화, 일부 현장의 경우 적자 시공 현상이 발생함.
- 일부 유통사의 경우 건설업계가 시공 원가 상승 및 수급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기대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보임.³⁴⁾
- 이러한 행위는 2004년 ‘철근대란’ 당시에도 발생하는 등 건설용 철강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철강재 가격 상승이 건설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

■ 건설용 철강재 가격 폭등과 이로 인한 수급난은 현장별 이윤이 2~3%에 불과한 건설업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

- 특히, 현금 구매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내·외장재 등 타 건자재와 달리 건설용 철강재는 골조 자재이므로 수급난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공사 기간의 지연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함.³⁵⁾

- 내·외장재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긴급 수입이나 공정 변경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나, 철강재의 경우 대응이 불가능함.
- 특히, 유통사 등을 통한 대체 구매가 어려운 관급 철근 공급 대상 공공 건설현장의 경우 긴급한 물량 소요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납품 기일(하차장 상차도 기준 최대 45일)을 지연한 수급이 예상되어 공기 지연에 따른 건설업체의 피해가 예상됨.

33) 건설경제, 자재값 ‘급등’ 건설사 ‘시름’, 2008.1.30일 기사.
 34) 건설경제, 유통업체 철근 사재기 대책 촉구, 2008.1.27일 기사.
 35) 최민수(2004), 전계서.

■ 건설업체는 발주자와 도급 계약을 통해 상호 체결한 낙찰금액 내에서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철강재는 시공 원가의 7~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철강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조달청 발주 2015년 공공 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결과, 총 61개 사업에서 건설용 철강재(철근 및 H형강)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축공종 직접공사비(관급자재 포함) 대비 7.36%, 총공사비 대비 3.87%를 차지함(표 7) 참조).
- 건설용 철강재가 무역 장벽 등 제도 신설로 인해 수입이 중단되었다고 가정할 시 최소 최근 5년 간 국내산 및 수입산 평균 가격 격차인 철근 13.5%, 형강 18.9%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공종 직접공사비는 평균 1.07%, 총공사비는 0.36%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2015년 건설투자액 기준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7,400억원의 추가 부담³⁶⁾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최근 10년래 최고 고점인 전년 대비 50% 철강재 가격 상승 가정시에는 건축공종 직접공사비는 평균 3.72%, 총공사비는 1.93%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 건설투자액 기준 최소 2조 6,700억원에서 최대 3조 9,8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³⁷⁾
- 계상에서 미고려한 열연후판 등 기타 건설용 철강재 가격 인상에 의한 추가 비용과 건자재 비용 인상시 관급자재 대비 사급자재 인상 폭이 큰 것을 종합 감안할 경우 이러한 가격 인상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표 7〉 2015년 공공 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기준 철강 자재비 현황 및 가격 인상 시뮬레이션

(단위 : %)

구분		최소	최고	평균
분석 원가 기준	건축공종 직접공사비 대비 철강 자재비 비중*	3.26	14.54	7.36
	총 공사비 대비 철강 자재비 비중	1.20	9.24	3.87
철근 13.5%, 형강 18.9% 인상 기준 추산	건축공종 직접공사비 대비 철강 자재비 비중*	3.70	16.87	8.43
	총 공사비 대비 철강 자재비 비중	1.36	9.21	4.23
철강 자재비 50% 인상 기준 추산	건축공종 직접공사비 대비 철강 자재비 비중*	4.89	21.81	11.07
	총 공사비 대비 철강 자재비 비중	1.80	13.85	5.80

주 : *의 건축공종 직접공사비에는 관급자재 비용 포함.

자료 : 조달청, 2015년 공공 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2016. 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추산.

36) 2015년 건축투자액 138.3조원 반영(최소)에서 최대 2015년 건설투자액 206.2조원 반영시 추정액임.

37) 본 추정은 조달청 발주 61개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설용 철강재 비용 비중을 산정하였기에, 주거시설 및 토목시설을 포함한 전체 공종에 대한 공사비 대비 건설용 철강재 비용 비중으로의 대푯값으로는 한계를 안고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함.

- 특히, 공공공사는 예정가격 대비 70~88%선에서 낙찰되고, 주거 또한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적자 시공이 만연하고 있는 상태임을 고려할 때 자재 가격의 급등은 치명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 에스칼레이션제도도 매우 경직되어, 계약금액 조정 물가 기준율이 3%이고 조정 기준일도 90일임을 고려시 건설업체가 자재 가격의 급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이는 곧 건설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기에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위축은 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더구나 최근 건설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민간 주택시장의 경우는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변경을 기대하기 힘들어 건설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도산의 문제에 더욱 취약함.

 - 민간공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하여 공사현장 차원의 공종별 시공 계획의 내실화 및 자재 협력사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조달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그칠 수밖에 없어 대응력이 매우 취약함.

3. 수입 규제시 통상 및 무역 마찰의 가능성 존재

(1) 국산 건설자재의 우선 사용 규제시, 무역 마찰 우려

- 수입 건설자재에 대한 원산지 표기와 아울러 건설용 철강재에 대한 국내산 우선구매 제도 시행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내국민 우대 조항 배치,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WTO 규범과의 충돌 발생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³⁸⁾

 -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제1조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구매 행위를 보조금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나, WTO GATT 협정 제3조 8항 (a)에 따라 “해당 규정이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정부의 목적을 위해 구매되는 상품의 조달과 관련된 법률, 규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위반 및 내국민 우대 조항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임.³⁹⁾

38) 한국철강협회, Buy Korea 법안 Q&A, 2016.

39) 특히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도가 현행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철강재에 대한 국내산 우선구매제도 또한 직접적인 통상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수준임.

❖ 다만, 정부조달시장만 해당되는 건설용 철강재 국내산 우선구매제도 외 공공·민간 사업을 아우르는 건설자재 원산지표기제도는 중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을 안고 있음.

- 관련 법률이 「건설산업진흥법」 제57조에 따른 주요 건설 자재·부재⁴⁰⁾의 원산지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중 실제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 이루어지는 건설자재는 철강재가 유일하며, 건설용 철강재의 대표적 수입국은 중국이기 때문임.
- 최근 입법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외국 제품에 대한 차별 및 진입 장벽의 이유로 반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음.⁴¹⁾

❖ 또한 건설자재 원산지표기제도는 WTO협정 중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에 저촉될 우려가 높음.

- 특정 국가의 제품 수입 및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와 관련된 국내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WTO협정 중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⁴²⁾에 저촉될 우려가 높음.
- 더구나 중국 또한 WTO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무역 마찰 외에도 WTO 제소 등에 따라 일본 등 타국과의 무역 마찰로 확산 가능함.

(2) 중국과의 무역 분쟁 우려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000년에는 10.7%이었지만, 2015년에는 26.0%를 기록,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기도 함.

- 2015년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371억 달러이며, 대중국 수입액은 902억 달러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보다는 수출이 469억 달러 더 많은 상황임.

❖ 건설현장 및 완공된 시설물의 표지 또는 표지판에 건설 자재 및 부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일종의 비관세 장벽(NTB : Non-Tariff Barriers)으로 작용하여 중국산 건설용 철강재의 국내 수입을 억제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밖에 없음.

-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수단을 의미하며, 수입허가제, 기술무역 장벽, 위생 및 검역 조치, 통관, 원산지 규정 등이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40)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제1항에서 품질확보 대상 건설 자재·부재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95조 제1항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바닷모래, 부순골재, 철근, 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을 품질확보 대상 건설 자재·부재로 규정하고 있음.

41) 한국수입봉형강품질관리협회 수신 중국대사관 공문(2016.11.7).

42)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제2조 나호, 다호 : 원산지 규정은 무역상의 목적을 직·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설현장 및 완공된 시설물의 표지판에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가 현실화 될 경우, 중국산 건설용 철강재에 대한 수입 억제 효과가 발휘될 개연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상대국의 조치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⁴³⁾

〈표 8〉 중국의 주요 무역 장벽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수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토류 수출 통제 • 비철금속 수출 통제 	
수입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품 수입 규제 •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지연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 절차의 일관성 및 투명성 결여 : 각 해관(세관)의 품목 분류 및 과세가격 산정 등에서 자의적 집행 • 항구별로 상이한 라벨, 포장 기준 • 통관항 임의 지정 	
정부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달 관련 법령, 제도, 이행의 투명성 결여 • 정부조달시 외국 기업 차별 	
무역상 기술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튬이온전지 안전기준 • 강제인증제도(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IT 제품에 대한 규제 : 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관리 방법 • 독성 화학물질 : 162개 화학품을 수출입제한 유해화학 목록으로 지정 • 의약품 :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발급하는 수입의약품 등록증 취득 • 의료기기 : 수입 허가 • 화장품 : 위생안전성 검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식품의 과도한 검역 기준 • 보건(기능) 식품 위생 허가 	
지식재산권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 유통, 관광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일부 제한 • 문화 콘텐츠 투자 제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무역장벽 보고서, 2014, pp.26~47.

■ 건설 자재 및 부재의 원산지 표시에 의해 중국산 건설용 철강재의 국내 수입이 축소 될 경우 자칫 한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음.

- 중국은 다양한 비관세 무역장벽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용 철강재를 둘러싼 한중 간의 무역

43) 일례로 2005년 9월 “중국산 납 김치 및 기생충 알 검출”되었다고 한국 정부가 발표하자, 중국은 한국산 김치, 고추장, 불고기 양념장에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고 수입중단 및 한국산 관련 품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무역 보복조치를 시행함(세계일보, “한중 김치전쟁 위기”, 2005.11.1) 또한, 2012년 5월 필리핀과의 영토분쟁에 따라 필리핀산 바나나 통관 거부, 2010년 9월 일본과의 센카쿠제도 분쟁에 따라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으며, 2010년 10월 노르웨이의 반체제 인사 류사 오보에게 노벨평화상 수여에 반발하여 노르웨이산 연어수입을 중단한 바 있음.

갈등이 타 산업의 대중국 수출 주력 상품으로 확대될 수도 있음.

■ 일례로 중국의 건설자재 시장 규모는 2014년 현재 380조원(2조 1,170억 위안) 규모이며, 최근 도시 집중화 현상 등으로 건설자재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⁴⁴⁾ 국내에서 국산 건설자재의 우선 사용이나 건설현장 내 원산지 표기 의무화 등으로 수입산 건설자재의 수입이 인위적으로 억제될 경우, 국내 건설자재업체의 중국 진출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최근에는 친환경 고급 자재를 찾는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
- 특히 2014년 한·중 FTA 타결로 인하여 특히 고기능성을 갖춘 국내 건자재는 이미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을 더욱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44) KOTRA & globalwindow.org, 2016.5.14.

V 정책 대안

1. 기본 방향 - 일정 수준 건설자재의 수입 허용 필요

(1) 건설현장 내 표지판에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는 심각한 행정 규제

❖ 외국의 경우, 원산지 표기는 위생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하며, 건설현장의 표지판이나 준공석 등에 건설자재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일반적으로는 자재 납품시에 건설업체에게 원산지를 알리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자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품서 등에 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를 건설현장 표지판이나 건물 완공 후 표지판에 명기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됨.

❖ 국산 건설자재와 마찬가지로 수입산 건설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도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관련 KS규격 또는 시방서 등의 품질 기준에 충족하는 것이 전제되므로 KS규격 등에 미달되는 저품질 자재를 사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공사현장에서는 건설 자재나 부재의 납품업체 선정시 시험성적서 교부와 더불어 공장 실사(實査) 등을 통하여 품질 보증 체계를 확인하고 있음.
- 건설현장에서는 품질관리 및 시험 체계를 구축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 KS 규정 등에 의거하여 반입되는 자재·설비에 대하여 품질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⁴⁵⁾, 필요시 납품서에 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기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
- 건설 자재·부재를 생산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건설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 자재·부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 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음.⁴⁶⁾
- 만약,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경우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2개월)가 부과됨.⁴⁷⁾

❖ 결과적으로 일부 부적격한 수입산 자재 등에 한정된 문제를 일반화하거나 혹은 선입견에 근거하여 양질의 수입산 자재까지 활용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45) 건설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함(「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참조).

46)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참조.

47)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별표6 참조.

- 일례로 철근의 경우 철강 제품 중 생산 난이도가 높은 제품이 아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 수출업체들은 열연코일 등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춘 업체들로서 국내 제강사 대비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생산하고 있음.⁴⁸⁾
- 중국에서 H형강 등 건재 제품의 규격은 "GB"로 불리는데, 한국공업규격(KS) 및 일본공업규격(JIS)과 비교한 결과, 품질·규격에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⁴⁹⁾

(2) 염가(廉價)이면서 품질 우수한 외산 자재의 활용 확대 필요

- 근래의 사회자본 정비를 위한 건설투자의 증가 요구에 대응해 기존과 동질·동량 혹은 그 이상의 건설사업을 향후 전개하기 위해서는 건설비의 절감이 필수 조건의 하나임.
 - 더구나 국내 건설사업의 축소에 따라 건설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건설비 절감이 중요한 과제임.
- 건설비 중 건설자재 비용은 전체의 45% 이상에 달하고, 건설비 감축을 위해서는 건설자재 비용을 저감하는 것이 기본 조건임.
 - 해외 건설자재에는 값싸고 품질이 뛰어난 제품도 있고, 이들이 국내외에서 큰 제약 없이 유통되면 건설비의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건설자재의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품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건자재의 구매선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을 갖춘 외국산 건자재의 구매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동일한 품질을 갖고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의 증대 및 국가 재정의 절감에 기여할 수 있고, 해당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음.
- 최근 각 국의 사례를 보면, 경쟁력 있는 자재와 설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글로벌 소싱이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품질 면에서 문제없고 용도가 맞으면 국내 자재나 수입 자재를 선택하는 데 큰 제약이 없음.

48) 한국수입봉형강품질관리협회 보도자료(2015.9.3) 참조.

49) 杉山 勉, 中国の鋼材市場と日本への影響(建設向け鋼材の現地調査を踏まえて), 積算資料, 2010.11.

- 일본에서는 일본공업규격(JIS)을 취득하는 어려움 등을 배려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자재품질증명" 제도를 적용하고 해외 건설자재가 건설공사에 널리 이용되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⁵⁰⁾
- 일본에서는 그동안 주로 토목용으로 수입 자재를 도입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요자 측에서 건축 용도로도 수요가 늘고 있음.⁵¹⁾

(3) 철강재는 수요의 15~20% 수준의 안정적 수입 물량 필요

- 국내의 철근이나 H형강 등의 철강재 시장은 과점 시장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철강재의 수입이 없을 경우, 심각한 수급 불안정과 가격 폭등 등이 우려됨. 이는 결과적으로 건설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나 일반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철근이나 H형강 등 건설용 철강재의 경우,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수요의 10~20% 수준을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입선과 국내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철강재 수입량 산정에 있어서는 국내 업체가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어 포스코는 2015년 11월부터 베트남 공장(POSCO SS-VINA)에서 생산된 철근과 H형강을 국내에 반입하고 있음.⁵²⁾

2. 과도한 수입 품목은 '반덤핑 관세'로써 해결 가능

- 수출국의 기업이 수입국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가격을 부당하게 낮춰 수출하여 수입국의 산업에서 피해를 입혔을 때, 수입국에서는 정상적인 가격과 부당한 영업이익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란 수출국의 기업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보았을 때 수입국 정부가 정상가격과 부당 영업이익의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⁵³⁾

50) 일본 건설성에서 마련한 '공공공사의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행동 계획'을 보면, 공공공사의 원가 절감을 위하여 해외 건설자재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등을 추구하고 있음.

- 해외 자재 활용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하여 가칭 '해외 건설자재 활용 연합회의'를 설치
- 해외 자재의 품질, 공급 능력, 납기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 자재의 활용을 꾀하는 시범 공사의 실시
- 해외 자재 등의 이용 촉진을 위해 해외건설 기자재, 설비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정보 수집·제공의 충실화 추진

51) 国内市場における輸入鉄鋼製品の現状(中国製H形鋼の実態を聞く), 積算資料, 2011.9.

52) EBN, 2016.11.8(<http://www.ebn.co.kr/news/view/860410>).

53) 이를 '덤핑방지세', '부당염매관세', '덤핑관세'라고 함.

- 중국산 철강재와 관련하여 덤핑(dumping)에 의한 과도한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반덤핑 관세로써 충분히 해결하는 것이 가능함.
- 현재 H형강에 대해서는 2015년 7월부터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태임.
 -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제제는 2015년 7월부터 발효되어 2020년 7월까지 5년 간 28.23~32.72%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중국의 7개 대형 제조업체의 H형강 수출량이 연간 58만톤이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음.

3. 중국산 철강재의 품질 강화 대책

(1) 수입 단계에서 품질 검사 후 판매

- 수입 통관 후, 보세창고에서 시험·검사 설비를 갖춘 업체나 혹은 공인 시험기관의 주도하에 수입된 철강재를 전수 조사하여 시중에 유통시키는 방안을 검토
 - 일정한 시험·검사 설비를 갖춘 업체나 혹은 공인 시험기관에 한하여 허가제로 운용할 경우, 무분별한 수입을 막고, 실명제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2) 유통 과정의 품질 문제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으로 해결 필요

- 품질이 부적합한 수입산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문제는 정부에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써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원산지 위조 등 유통 단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페널티 부과 필요

(3) 중국의 중소(中小) 철강사로부터 수입 금지

- 중국 철강업체들의 제조 시설은 천차만별이며, 새로 건설된 공장은 세계에서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공장은 매우 오래된 설비를 갖추고 있음.
 - 예를 들어 馬鋼을 비롯하여 寶鋼, 萊蕪, 鞍山, 日照 등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신규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음.⁵⁴⁾
- 중국철강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는 중국 철강 관련 기업은 1만 1,031개에 달

54) 国内市場における輸入鉄鋼製品の現状(中国製H形鋼の実態を聞く), 積算資料, 2011.9.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중소기업의 수는 1만 608개로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 철강업계의 톱 4의 생산량이 전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에 22%로서, 일본의 74%, 미국의 53%보다 낮은 수준임.⁵⁵⁾

■ 현재 국내의 중국산 철근 수입처를 보면, 세계 조강 순위 50위권 내 중·대형사들이 주류이나, 일부 중소 철강업체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재와 관련하여 품질 문제 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수입 철강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철강 수입선을 대형 철강업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전영준(연구위원·yjjun@cerik.re.kr)

박용석(연구위원·yspark@cerik.re.kr)

55) SPEEDA総研, 厳冬期を迎える中国鉄鋼業界、現状と今後の方向性をみる, 2015.12.5(<https://www.uzabase.com/speeda/analysis/archive/21/>).